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25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상(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3. 5. 3.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 강원 평창군 D 전 2,370㎡에 관하여,
가. 피고와 E이 2022. 4.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E에게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22. 5. 16. 접수 제86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 5. 20.경 E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21.6%, 지연손해금율 24%, 대출만기일 2026. 5. 20.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E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21. 7. 1.부터 정해진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사해행위와 E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7. 4. 14. 강원 평창군 D 전 2,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912분의 717 지분에 관하여, 2021. 3. 4.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912분의 1,195 지분에 관하여 각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2022. 3. 24.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05155)이 내려져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E은 2022. 4. 29.경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2.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22. 4.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E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무렵 E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E의 어머니인 피고의 소유인데, 관리를 위하여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여 둔 것으로서 E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형식이었을 뿐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E과 피고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E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피고는 E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E이 2021. 6. 28. 서울회생법원에 2021개회15935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 24. E의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결국 E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E이 F단체에 채무조정신청을 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와 E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E이 F단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원고가 E을 상대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이 사건 소에 원고와 E 사이의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는 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 협약이 E이나 피고에게 곧바로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E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또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1) 피고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하였다.